

1. 운 용 총 칙

회계년도 : 2011년
 예산차수 : 본예산
 회계구분 :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

① 기금설치 개요

- (1) 설치근거 :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, 부산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9조
- (2) 설치목적 :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
- (3) 설치년도 : 2003년

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(1) 기금사업의 목표 : 재개발,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정비사업 활성화
- (2)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 :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▷ 정비기반시설 사업비 보조, 이주비 은행융자금 이차보전,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및 정비사업관련 행정지원비, 임대주택 매입

③ 기금조성 및 운용

(1) 기금조성 현황 (단위 : 천원)

2010년도 말 현재액 ㉠	2011년도 조성계획			2011년도 말 현재액㉡ = ㉢ + ㉠	비 고
	수입 ㉢	지출 ㉣	증감 ㉤ = ㉢ - ㉣		
177,702,427	6,885,036	39,327,725	△32,442,689	145,259,738	

- (2) 재원조성 : 출연금(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%),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, 개발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
- (3) 지원기준 : 주택공사 등 공기업-50억원이내, 공기업외 사업자-30억원이내
- (4) 지원대상 : 정비계획수립 용역비,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(도로,공원,녹지), 이차보전, 임대주택건립 및 매입 등